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수산학석사학위논문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김문주

수산학석사학위논문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지도교수 유 명 숙

이 논문을 수산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자원학과

김 문 주

김문주의 수산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일



주 심 수산학박사 남 기 완 (인)

위 원 이 학 박 사 오 철 응 (인)

위 원 농 학 박 사 유 명 속 (인)

목 차

I. 서론	1
II. 수산자원의 특징	3
1. 개설	3
2. 어장과 자원의 한정성 및 영속성	3
3. 자원회복의 장기성	3
4. 국제기구의 수산자원보호 강화	4
5. 수산자원보호방법의 복잡성	4
III.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	5
1.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	5
2.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5
3. 수산자원의 보호	6
4. 자율적 어업자협약제도	6
5. 수산자원의 회복	6
6. 수산자원의 조성	7
7.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7
IV. 수산자원관리 정책	8
1. 개설	8
2. 수산자원관리	8
1) 가입관리	9
2) 성장관리	9

3) 자연사망관리	9
4) 어획관리	10
5) 환경관리	10
4. 어업규제정책	10
1) 질적규제	10
(1) 포획, 채취등 제한	10
(2) 어선, 어구, 어법 등의 제한	21
2) 양적규제	35
(1) TAC (총허용어획량)	35
(2) 어선 감척사업	40
5.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조성정책과 운영상황	44
1) 개설	44
2) 자원조성정책	44
3) 자율관리어업	48
V. 개선 사항	52
VI. 결 론	55
참고 문헌	56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정책	8
〈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12
〈표 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18
〈표 4〉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	23
〈표 5〉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31
〈표 6〉 TAC 관리제도 실시어종 어획동향	36
〈표 7〉 연근해 어업생산량	38
〈표 8〉 자원회복 및 TAC 대상어종 연도별 증감률	39
〈표 9〉 연안어선 연도별·업종별 감척 진행 현황	42
〈표 10〉 인공어초 시설 현황	45
〈표 11〉 바다숲 조성 현황	45
〈표 12〉 시범 바다목장	46
〈표 13〉 바다목장 조성현황(연안(소규모))	47
〈표 14〉 연도별 수산종묘 매입, 방류실적	48
〈표 15〉 연도별, 유형별 공동체 현황	50
〈표 16〉 2010년 자율관리 등급별 현황	50
〈표 17〉 2010년 자매결연 공동체 현황	51
〈표 18〉 자율관리 졸업공동체 현황('10까지)	51

<그림 차례>

- [그림 1]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변동 예측 1
- [그림 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20
- [그림 3] 수산종묘매입방류량 48



**On Fishery Resource Management la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way to improve system**

Kim, Moon Joo

*Department of Biological Resour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ishery Resources, not owned to a specially designated person and self renewable like common property resources, has been applied public sanctions against various issues.

Though their distinctiveness as well as complicated management puts different ways for protection or laws into effect, it's outstanding that there has been a lack of efficiency due to a changeable administrative authority, gaps between regulations, government restriction and support-focused policies

Accordingly, it's consistently revised in management system with it specially legislated law called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Law" to manage resources in a permanently effective way.

The sections o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re combined out of details on Protectorate Decree of Fishery resources,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prescribed by Fisheries Law & Enforcement Decree of Fisheries Law, reporting rules on status of inshore and offshore fishing, rules on allowed catches control and administrative actions or procedures against violation.

Moreover,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Law enacted in April, 2009 is in the light of planning new goals, protection & recovery for effectiv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o aim at consistent development in fishing industry and increase in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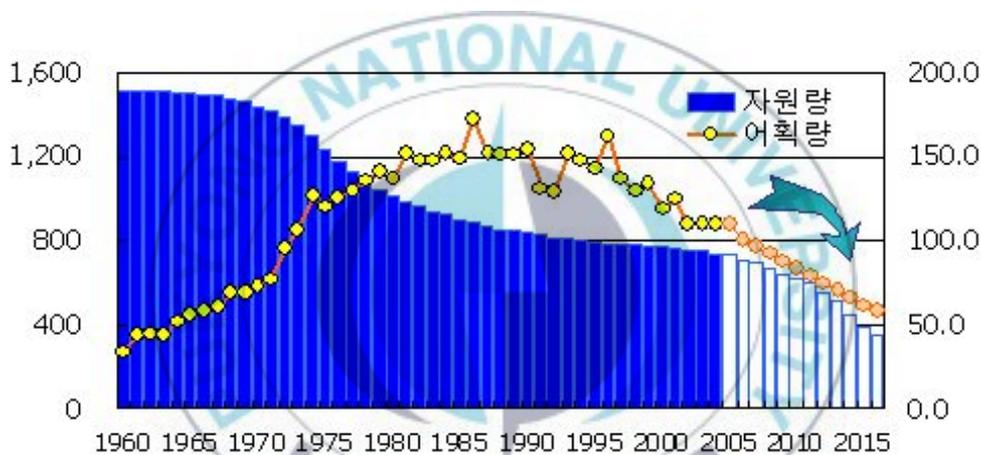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Law covers establishment of general to execution plan, simple survey or scrutiny, evalu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resources, not to mention, autonomous agreement conducted by fishers

With respect to above, it's been examined on comparison of new management regulation to existing one and operating conditions o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Law basis



I. 서론

수산자원은 대표적인 자율갱신자원이자 공유재로서 그 무주물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되기 쉬워 과거부터 많은 공적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과도한 어획, 해양오염, 무분별한 매립 등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1980년부터 수산자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어획 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어업생산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



[그림 1]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변동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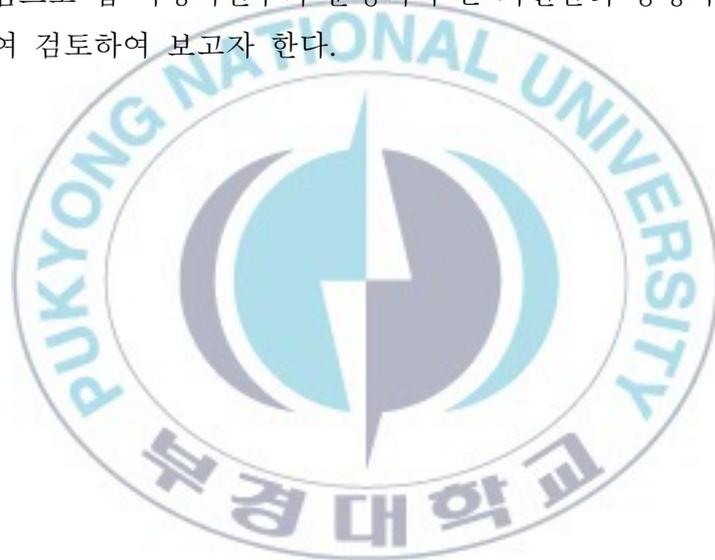
수산자원은 다른 자원과는 달리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산자원보호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가 어려워 자원관리를 위한 많은 정책 및 법규가 제정 및 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규간의 격차와 정부규제와 지원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그 효율성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 왔다.

이에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영속적인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통합하여 단행법을 제정하고 추가로 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재정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산업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

자원보호령,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중에서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합하여 2009년 4월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수산자원관리규정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자원관리 상황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1조

II. 수산자원의 특징

1. 개설

수산자원은 다른 자원과는 달리 각 어업별, 어종별, 지역별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관리가 난이한 상황으로서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2. 어장과 자원의 한정성 및 영속성

해양은 넓으나 실제 어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어장은 어업의 방법에 따라 한정된다. 수심이나 수온 해류의 종류등 해황 여건에 따라 어류의 회유 범위와 서식처가 상이하어 어업별로 조업어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각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등으로 어장면적까지 한정되게 되어 어장과 자원이 한정되므로서 최대지속적인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어획량도 한정되어 궁극적으로 어획노력량 마저도 제한을 받게 된다.

3. 자원회복의 장기성

어류나 패류등 대부분의 자원은 성장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한번 자원이 감소되거나 고갈되는 경우에는 그 회복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동성이 전혀없는 패류나 회유성이 아닌 저서어류등은 어획노력을 강화하면 자원은 일시에 고갈된다.

4. 국제기구의 수산자원보호 강화

세계의 수산업도 모두 자국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자국의 영토화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어업기술이 약한 국가에서도 타국에 입어료를 받고 어획권타를 할당하여 어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수산기구에서도 특정어업이나 어종에 대하여 어획을 규제 내지는 금지하고 있어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자원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자원보호가 필요하다.

5. 수산자원보호방법의 복잡성

수산자원은 어획시 한가지 어업에서 한가지 어종만 어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종이 혼획될 뿐만 아니라 한가지 어종도 여러종류의 어업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조업하는 어장도 어업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규모도 각 어업별,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률적인 목표설정엔 곤란한 점이 많다.

Ⅲ.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수면의 관리,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어업자 협약 신설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²⁾

1.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³⁾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특성에 맞게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수산자원 동향,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자원회복계획, TAC,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⁴⁾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산자원회복계획, TAC 설정 및 관리 시행계획,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지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시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방향, 김대영, 원간 KMI 수산동향, 2010.7

3) 수산자원관리법 §7조 내지 §9조

4) 수산자원관리법 §10조 내지 §13조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수산자원의 보호⁵⁾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불법 어획물 방류명령,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제한, 휴어기 설정, 조업척수·어선 선복량·어선 사용의 제한, 어구사용·유해어법금지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4. 자율적 어업자협약제도⁶⁾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일정한 수역에 대해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어업, 자원관리, 협약 유효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수산자원의 회복⁷⁾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회복명령,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TAC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 지정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수산자원관리법 §14조 내지 §27조

6) 수산자원관리법 §28조 내지 §34조

7) 수산자원관리법 §35조 내지 §40조

6. 수산자원의 조성⁸⁾

인공어초, 바다목장, 해중림, 수산종묘방류, 해양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수산종묘의 부화·방류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 수산자원의 접사용료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7.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⁹⁾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은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

8) 수산자원관리법 §41조 내지 §45조

9) 수산자원관리법 §46조 내지 §53조

IV. 수산자원관리 정책

1. 개설

수산자원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그 규제의 근거 및 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시행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자원관리규정을 하나의 단일법제화 하여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중전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정책은 크게 규제정책과 자원조성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하에서는 수산자원관리의 이론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기존 수산자원관리정책의 분류에 따라 2009년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상 자원관리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정책

구분	방법	내용	비고
어업규제 정책	질적규제	-어기, 조업구역, 어법등의 제한	소극적규제
	양적규제	-어선수, 조업횟수 등의 어획노력량 제한 -TAC	적극적 규제
수산자원 조성정책	적극적 방법	-인공어초투하사업 -종묘방류사업등	

2. 수산자원의 관리

자원관리란, 자원생물의 자연생산과정을 인간의 이용에 합당하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자원의 이용은 어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자원관리는 어업관리의 기초가 된다. 자원관리에는 자원의 양과 질이 관련된다. 자원의 양과 질은 러셀의 방정식에 나오는 가입 · 성장 · 자연사망 및 어획사망의 네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원관리는 이 네가지 요소의 관리로 통하며 환경에 의한 작용요소가 더해져 이루어진다.

1)가입관리

자원 생물의 초기 발육단계에 있는 개체의 생존율은 미성어기나 성어기와 같은 가입 이후의 단계에 있는 개체의 생존율보다 월등하게 낮다. 따라서 알에서 부호하여 자어기 및 치어기를 거치는 동안의 성육을 보호하고 사망률을 낮추어, 생산개체수를 높이면 가입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공수정란 방류나 인공부화방류는 가입관리의 대표적인 예이며 조업의 시기나 장소, 어획개체의 크기나 성별, 또는 망 어구의 규격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입관리의 법적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성장관리

자원량의 증가요소로서 성장을 관리하는 데에는 자원생물에게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될수가 많다. 전복에 있어 냉수성의 북방종을 난해역에 이식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성장관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3)자연사망관리

생물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생존투쟁을 하면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지만, 특별히 자원 생물에게 해를 끼치느느 생물에 대해 인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연 사망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실례는 적으며 경쟁종 또는 천적으로부터 중요 재래종을 보호하기 위해 외래 생물의 이식을 규제하는 것이 한 예가 된다.

4) 어획관리

일반적으로 어획관리는 어구, 어법, 어장, 어획량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운용된다. 즉 어선의 규격과 출어척수 등을 규제, 어획효율이 과다하게 높은 어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어기 중에 어획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등은 어업생산량과 조화된 재생산력을 자원에게 부여하는 데 유효한 조치로서 어획관리는 적정어획의 문제로 귀결된다.

5)환경관리

환경관리란, 생물이 그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을 인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육환경의 개선책으로 연안에서는 어류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어초 및 해중림 같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어업규제정책

1) 질적규제

(1) 포획, 채취등 제한

(가) 포획, 채취 금지(수산자원관리법 §1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6)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2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관한 규정이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없이 운영되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예서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및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규정하고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 채취의 금지를 아래[표2] 및 [표3]과 같

이 법규화하였다. 종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포획채취금지 어종으로 규정되었으나 갯녹음 현상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체수 조절 논의가 되어오던 북쪽말뚝성게는 포획, 채취 어종에서 삭제되었다.



<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구역	포획·채취 금지 기간
1. 모든 수산동식물		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 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다.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① 전해역 ② 경상북도
			①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라. 연어	<i>Oncorhynchus keta</i>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해역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① 전해역 ② 백령도,소청도,대청도 일대 해역(부도 1)	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i>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백령도,소청도,대청도 일대 해역(부도1) 연평도 일대 해역(부도2)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

			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다. 붉은대게	<i>Chionoecetes japonicus</i>	①전해역 ②강원도 연안자망어업	①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②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라.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i>Penaeus orientali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i>Fulvia mutica</i>	①전해역 ②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①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①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 ②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	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①전해역 ②제주특별자치도	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i>Panopea japonica</i>	강원도와 경상북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i>Patinopecten yessoensis</i>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해조류	가. 개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	<i>Ecklonia cava</i> <i>Ecklonia kurome</i>	① 전해역 ② 제주특별자치도	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곰피	<i>Ecklonia stolonifera</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i>Undariopsis peterseniana</i>	제주특별자치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i>Eisenia bicyclis</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진도 박, 떡도박)	<i>Grateloupia spp.</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 월 30일까지
사. 뜰부기	<i>Silvetia siliquosa</i>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 지
아. 우뚝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 월 30일까지
자. 툇	<i>Hizikia fusiformis</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 월 31일까지
6. 기 타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7월 31 일까지



<표 3>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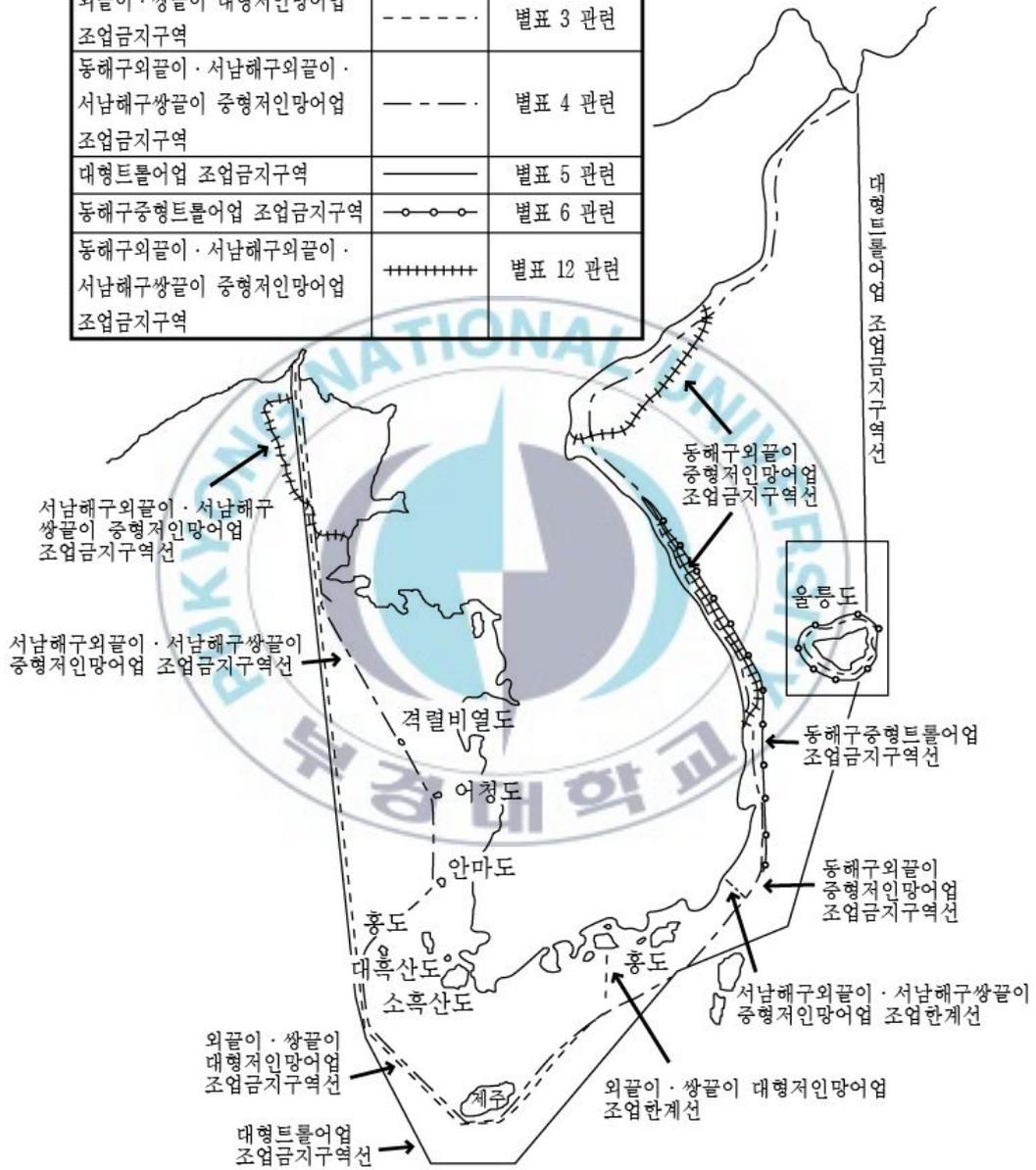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i>Pleuronectes herzensteini</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i>Oplegnathus fasciatus</i>)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i>Pagrus major</i>)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i>Dentex tumifrons</i>)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i>Arctoscopus japonicus</i>)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i>Theragra chalcogramma</i>)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i>Miichthys miiuy</i>)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i>Sebastes inermis</i>)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i>Conger myriaster</i>)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i>Sebastes schlegeli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i>Parulirus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마. 필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i>Batillus cornutus</i>)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 · 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i>)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 미터 이하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 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4. 기타	대문어 (<i>Octopus dofleini</i>)	300그램 이하

(나) 조업 금지구역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1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그림2]와 같이 조업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어업별	범례	비고
외끝이·쌍끝이 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 관련
동해구외끝이·서남해구외끝이· 서남해구쌍끝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 - - -	별표 4 관련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5 관련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6 관련
동해구외끝이·서남해구외끝이· 서남해구쌍끝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 + + +	별표 12 관련



[그림 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다) 휴어기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19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또는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어선, 어구, 어법 등의 제한

제정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 조업척수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20조)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특정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 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 할 수 있다.

(나) 어선의 선복량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21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던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법규화 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어선의 사용제한 (수산자원관리법 §22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어선의 사용제한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법규화 하여 각 어선은 해당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도와서는 아니되며 역시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어구의 사용금지 (수산자원관리법 §23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어구 사용금지 등의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범규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하여 사용해역 및 사용기간 및 시기,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을 [표 4] 및 [표 5]와 같이 규정하였다.

①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및 구역



<표4>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금지기간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1.근해어업	가. 동해구의끝이중형 저인망어업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중
		서남해구의끝이중 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서남해구쌍끝이중 형저인망어업		
	나.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금지	연중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멸치포획금지	연중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 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근해어업 (계속)	다. 근해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 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라. 근해안강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연중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근해어업 (계속)	바. 근해장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해통발어업	조업금지	연중
		대게 포획금지	연중
	근해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연중
	사. 기선권현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아.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근해어업 (계속)	자. 모든 근해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연안어업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연안선망어업	불빛 이용금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삼치 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멸치 포획금지	연중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연안어업 (계속)	다. 연안통발어업	계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게 포획금지	연중
	라. 연안조망어업	조업금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 연안자망어업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복망천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 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연안어업 (계속)	사. 연안들망어업	멸치 포획금지	연중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모든 연안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나. 해선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구획어업 (계속)	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우 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라. 패류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4> 계 속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마. 모든 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의 규격

<표 5>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근해어업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라. 대형트롤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4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바.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뎡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사. 근해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아. 근해안강망어업		35밀리미터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뎡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자. 근해장어통발어업		35밀리미터 이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차. 근해통발어업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붉은 대게	120밀리미터 이하. 2012년 4월 23일 부터는 125밀리미터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꽃게	65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카. 기선권현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뎡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2. 연안어업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1.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은 제외함 2.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연안선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전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라. 연안조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바. 연안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마)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등의 금지 및 유해어업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24,§25)

수산업법에 의거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하여서는 안 되며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적규제

(1) TAC (총허용어획량)

(가) 개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협약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서 허용어획량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 협약내용의 준수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질서 편으로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연근해 어업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체제 전환이 요구되어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자원남획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제도 보완책으로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에서 직접관리하는 TAC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¹⁰⁾

종전 수산업법 제56조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포괄적 위임되어 있던 TAC 제도를 금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그 제도 및 절차를 법규화하여 제도를 안정화시키며 자원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TAC 운영제도

TAC관리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원관리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며, 자원관리가 필요한 가치 있는 어종이면서 TAC 관리제도 시행이 용이한 어종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어업여건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수산자원관리법 §37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TAC 관리제도 실시어종 어획동향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 평가는 대상 어종별 생물학적 조사와 어획통계 자료등을 바탕으로 어종 특성과 자료수준에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자원상태를 평가하며 생물학적 적정어획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각종 자원관리 기준

10) 수산자원관리제도론, P.118

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자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유지·보호하기 위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산정한다.

<표 6>TAC 관리제도 실시어종 어획동향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2011년도		2010년도		2010/2011 TAC 대비
			ABC	TAC	ABC	TAC	
계	11종			425,320 (39,320)		417,300 (36,000)	증 8,020 (증 3,320)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60,000	160,000 (10,000)	169,000	169,000 (7,000)	감 9,000 (증 3,000)
전 쟁 이	대형선망	근해	21,000	21,000	21,000	20,000 (1,000)	증 1,000 (감 1,000)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32,000	32,000 (1,000)	31,000	31,000 (1,000)	증 1,000 (-)
대 계	근해자망, 근 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620	1,620 (120)	1,300	1,300	증 320 (120)
개 조 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연근해	2,400	2,400	2,100	2,100	증 300
키 조 개	잠수기	인천·경기·충남· 전북 연근해	2,700	2,700	2,700	2,700	-
꽃 게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13,200	13,200 (1,200)	10,000	8,000	증 5,200 (증 1,200)
오 징 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룰	연근해	188,100	188,100 (27,000)	180,000	180,000 (27,000)	증 8,100 (-)
도 루 목	동해구트룰, 동해구기저	동해 연근해	1,500	1,500	1,600	1,500	-
참 흥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특정해역, 흑산도근해	230	230	200	200	증 30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2,570	2,570	1,500	1,500	증 1,070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한치 제외)

②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관리할 유보량임

③ 제주소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대상 어종(물량)임

* TAC 설정기간 : '11.1.1 ~ '11.12.31(다만, 대게 '10.11.1 ~ '11.12.31,
제주소라 '10.9.1 ~ '11.12.31)

② 총용어획량의 할당(수산자원관리법 §37조)

TAC의 할당 배분은 어업자별·어선별 어획량의 격차에 따라 차별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어획 실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각 어선별로 차등 또는 동일하게 배분하는데, 할당 총량 중 70%를 어업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량(30%)는 할당량 소진이 많은 어업인에게 우선배정하고 추가할당량도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소진량이 부진한 어업인의 할당량 중 일부를 회수하여 추가 할당한다.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할당량 관리는 어선별로 배분된 할당량을 시·도를 통하여 보고되는 어업인의 어획량과 TAC 관리제도 실시 지역에 배치된 읍서버의 보고에 의하여 관리하며, 어업인은 수협, 또는 어업단체에 보고 시도가 취하하여 그 결과를 농림식품부에 보고한다.

③ 배분량의 관리(수산자원관리법 §38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안된다. 배분량을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하며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할 수있다.

④ 부수어획량의 관리(수산자원관리법 §39조)

총허용어획량 할당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여서는 안 되며, 단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다) 자원관리어종(회복어종 및 TAC어종)생산량

<표 7> 연근해 어업생산량

(단위 : 톤)

어종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합 계	522,109	578,652	521,889	496,977	548,406	602,745	658,462	561,320
소 계	94,390	107,615	104,538	121,050	144,879	143,102	163,017	125,513
낙지	7,248	7,023	7,658	7,397	8,625	7,879	7,013	7,549
오분자기	21	19	66	54	62	102	34	51
참조기	7,098	17,570	15,272	21,428	34,221	33,199	34,033	23,260
대구	1,826	2,641	4,272	6,810	7,533	5,399	6,870	5,050
가자미류	13,107	12,038	15,319	19,879	24,340	20,274	19,687	17,806
말뚝치	1,429	1,267	1,055	1,071	2,998	2,631	8,280	2,676
갯장어	800	766	810	672	1,071	1,306	1,650	1,011
갈치	62,861	66,291	60,086	63,739	66,029	72,312	85,450	68,110
소계	14,308	10,794	12,904	13,332	21,172	23,638	37,559	19,101
도루묵	1,928	2,472	2,401	2,647	3,769	2,720	3,939	2,839
꽃게	9,478	2,683	3,714	6,894	13,606	17,846	31,302	12,218
참홍어	222	259	255	392	375	400	400	329
개조개	2,680	5,380	6,534	3,399	3,422	2,672	1,918	3,715

소계	413,411	460,243	404,447	362,595	382,355	436,005	457,886	416,706
고등어	122,044	184,274	135,596	101,427	143,776	187,240	203,410	153,967
전갱이	20,454	25,513	42,608	23,227	19,089	22,748	22,087	25,104
붉은대게	19,262	23,113	21,926	23,890	25,388	28,293	29,955	24,547
키조개	2,443	2,471	3,453	5,409	7,897	5,489	7,368	4,933
제주소라	14,065	9,507	8,498	7,496	6,909	3,056	3,534	7,581
대게	1,889	2,605	3,240	4,062	4,817	3,019	2,372	3,143
오징어	233,254	212,760	189,126	197,084	174,479	186,160	189,160	197,432

※표시구분 :

자원회복어종
 자원회복어종+TAC대상어종(중복)
 TAC대상어종

<표 8> 자원회복 및 TAC 대상어종 연도별 증감률

대상어종	2004년	증감률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합계	578,652	10.8	521,889	-9.8	496,977	-4.8	548,406	10.3
자원회복	107,615	14.0	104,538	-2.9	121,050	15.8	144,879	19.7
자원회복 + TAC	10,794	-24.6	12,904	19.5	13,332	3.3	21,172	58.8
TAC	460,243	11.3	404,447	-12.1	362,595	-10.3	382,355	5.4

대상어종	2008년	증감 률	2009년	증감 률	2010년 (전망) 3개년('07-'09)대비	증감 률	2010년 (전망) 전년('09)대비	증감 률
합계	602,745	9.9	658,462	9.2	572,173	-13.1	539,214	-18.1
자원회복	143,102	-1.2	163,017	13.9	157,415	-3.4	171,994	5.5
자원회복 + TAC	23,638	11.6	37,559	58.9	38,574	2.7	40,322	7.4
TAC	436,005	14.0	457,886	5.0	367,184	-19.8	326,898	-28.6

자료: 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 어선 감척사업

(가) 개설

1980년 이후 어업자원의 자연성장율을 초과하는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 해양환경 악화 등에 따라 어업생산량 감소, 어선의 노후화 및 어선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 수지악화 등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WTO,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연근해 어업의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일반감척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법적근거

감척사업은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과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다) 연안어선 연도별·업종별 감척 진행 현황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최근 2008년 까지 업종별 연안어업 감척 실태를 나타낸다. 연안어장의 수산자원회복을 위하여 감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연안자망 2,710척, 연안안강망 93척, 연안선망 99척, 연안통발 1,336척, 연안들망 107척, 연안복합 5,382척 등 총 9,741척이 감척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예산은 총 3,540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9> 연안어선 연도별 • 업종별 감척 진행 현황

(단위 : 척, 억원)

업종		합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05~08)
합계	척수	20,617	54	111	110	48	63	-	36	55	21	16	639	841	1,598	2,836	4,457	9,732
	금액	7,609	49	91	80	42	53	-	37	57	38	15	67	300	503	987	1,750	3,540
연안 자망	척수	5,420												382	463	790	1,075	2,710
	금액	1,234												112	165	340		617
연안 안강 망	척수	371		4	13	48	3		35	27	21	16	18	0	3	34	56	93
	금액	232		3	8	42	2		36	29	38	15	19	0	2	18		20
연안 선망	척수	198												19	16	21	43	99
	금액	95												14	20	14		48
연안 통발	척수	2,672												238	306	326	466	1,336
	금액	650												85	110	130		325
연안 들망	척수	214												0	3	10	94	107
	금액	16												0	3	5		8

연안 조망	척수	10												0	0	2	3	5
	금액	2												0	0	1		1
연안 복합	척수	10,764												202	807	1,653	2,720	5,382
	금액	1,542												89	203	479		771
연안 해선 망	척수	106	54	47	3	1	1							0	0	0		
	금액	100	49	46	3	1	1							0	0	0		
연안 낭장 망	척수	213		60	94	59								0	0	0		
	금액	161		42	69	50								0	0	0		
재해 피해 어선	척수	634											634	0	0	0		
	금액	48											48	0	0	0		

주 1) 2008년 일부 시도는 2007년 감척물량을 08년도 물량으로 산정함.

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9)

3) 금액에서 지방비는 제외된 수치임.

5.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조성정책과 진행상황

1) 개설

과거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에 통합 규정하여 그 법적 안정성 강화와 기타 수산자원관리규정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자원조성정책

(1) 인공어초, 해중림의 설치사업

(가) 개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수중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증대, 연근해 오염, 자원남획 등의 원인으로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 기반을 확충하여 자원량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나) 운영상황

인공어초의 시설 현황으로서 [표10]에서 년도별 시설 현황과 적지 대비 시설 진척율을 분석하였으며 [표11]은 2009년부터의 바다숲 조성현황과 사업비를 구분하였다.

<표 10>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 ha)

시도	적지(A)	시설현황						진척율(%) B/A
		합계(B)	'05까지	'06	'07	'08	'09	
합계	306,751	206,500	188,028	5,450	4,698	3,965	4,359	67.3
부산	2,704	2,658	2,314	88	88	72	96	98.3
인천	20,276	10,551	9,291	328	244	196	492	52.0
울산	2,546	2,370	2,116	64	56	74	60	93.1
경기	7,598	4,681	3,556	192	193	352	388	61.6
강원	27,791	23,084	22,160	240	230	250	204	83.1
충남	30,746	17,347	15,739	516	528	-	564	56.4
전북	15,772	14,365	10,857	1,142	1,022	848	496	91.1
전남	55,973	42,673	39,249	896	868	829	831	76.2
경북	27,360	23,128	22,556	104	172	164	132	84.5
경남	51,220	35,886	34,670	516	268	268	164	70.1
제주	64,765	29,757	25,520	1,364	1,029	912	932	45.9

자료: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표 11> 바다숲 조성 현황(2009부터 35천ha를 대상으로 시설)

(단위 : 억원/천ha)

총사업비	조성대상	2009	2010	2011	비고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3,110	35천ha	100억원 (121ha)	150억원 (250ha)	129억원 (651ha)	5, 10, 12개소

자료: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가) 개요

바다목장이라 함은 일정한 해역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하게 하고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훈련된 수산종묘 방류로 환경친화적인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함으로써 최대한의 지속적 생산도모 및 국민관광, 레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운영상황

시범 바다목장의 사업기간별 총사업비와 지역별 바다목장 시설 현황을 [표12]에서 나타내었으며 연안(소규모)바다목장 조성현황을 [표13]에서 분석하였다.

<표 12> 시범 바다목장

연도별	해역별	합 계	통 영	여 수	울 진	태 안	제 주
	총사업비	1,589	240	307	355	337	350
	사업기간	'98~'12	'98~'06	'01~'10	'02~'12	'02~'12	'02~'12
	'09까지 투자(억원)	854	249	275	124	90	116
	'10년 예산(억원)	180	완료	33	55	47	45
	'11년 예산	174	-	-	108	33	33
	목장유형(면적)	248km ²	어업형 (20km ²)	다도해형 (110km ²)	관광형 (20km ²)	갯벌형 (75km ²)	체험·관광형 (23km ²)

자료: 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표 13> 바다목장 조성현황(연안(소규모))

구분		합계	'06	'07	'08	'09	'10	'11
물량	계	21개소	4	7	9	12	17 (완공:4)	21 (완공:3)
	신규		4	3	2	3	5	4
	계속			4	7	9	12	17
시설지역			강릉, 군산, 거제, 제주	보령, 직도, 사천	연평, 속초,	기장, 신 안, 강정	태안, 서천, 진도, 영덕, 울산	강진, 여수 경주, 거제
사 업 비	계	670억	40억	80억	90억	120억	170억	170억
	국비	335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5억
	지방비	335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5억

자료: 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3) 수산종묘등의 방류사업

연안 정착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민간 배양장으로부터 매입,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증강 및 민간의 자원조성사업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어장의 매립과 간척에 따른 어장의 조정 및 해양환경 오염심화, 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바 지속이용이 가능한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단위:천마리,백만원)

[그림 6] 수산종묘매입방류량

<표 14> 년도별 수산종묘 매입. 방류실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류량	17,975	85,257	126,302	100,670	92,294	128,359	84,728	90,524
사업비	1,188	2,672	6,343	8,191	8,988	10,779	16,946	17,233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종묘 매입.방류실적」

* 2008년 물량은 계획임

3) 자율관리어업

(1) 개설

정부 주도형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불법어업 추방, 자원의 조성·관리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수산업법 제70조(2008.02.29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자율관리어업의 주요내용과 현황

(가) 자율관리어업의 주요내용¹¹⁾

① 어장관리

어업자원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투석·해중림 등 어장환경 개선,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해적생물구제, 폐어구 수거, 어장휴식년제운영, 어장 청소 등을 실시한다.

②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어구수 축소, 그물코크기 확대, 체포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어장휴식, 생산량조절(TAC), 특정어구어법 사용제한, 종묘(패) 방류 등을 실시한다.

③ 경영개선

비용절감, 수습조절 등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생산·공동판매,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ON/OFF LINE 판매망 구축,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④ 질서유지

11) 해양수산 규제개혁사례연구, P.119

지역간·어업간 소득격차, 분쟁등의 해결을 위해 어장감시조 DNSUDD으로 불법어업 추방, 수산관계법령 준수, 교육참여, 선진지 견학,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한다.

(나)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표 15> 연도별, 유형별 공동체 현황

구분	참여 공동체수(개소) * 연도별 : 누계기준						참여 어업인수(명)	
	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전체	공동체평균
'01	63	32	11	8	12	-	5,107	81.1
'05	308	159	46	52	43	8	24,805	80.5
'08	659	341	78	115	102	23	50,728	77.0
'09	758	391	80	135	124	28	56,100	74.0
'10.8	863 (100%)	438 (50.7%)	85 (9.8%)	156 (18.1%)	143 (16.6%)	41 (4.8%)	60,902	70.6

* 어촌계수('09) : 1,993개, * 광역공동체수('10.12) : 44개소

<표 16> 2010년 자율관리 등급별 현황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계	121	58	5	29	24	5
풍요	7	4	1	2	-	-
모범	114	54	4	27	24	5

* 대상공동체 758개소 : 풍요 7개소, 모범 114개소, 협동 538개소, 참여 99개소

<표 17> 2010년 자매결연 공동체 현황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64	2	-	2	-	10	-	8	6	16	6	12	2
우수	32	1	-	1	-	5	-	4	3	8	3	6	1
신규	32	1	-	1	-	5	-	4	3	8	3	6	1

* 공동체간 멘토&멘티 결성(우수-신규 각 32개소)

<표 18> 자율관리 졸업공동체 현황('10까지)

구분	공동체수(개소)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졸업	64	2	2	1	1	7	-	6	9	19	8	7	2

* 4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졸업(제외)
 자료:제1차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3) 문제점

자율관리어업은 전국 1,978개(2008년) 어촌계 중 약 38%만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등 어업인의 자율관리 참여부족으로 변화주도 중심세력의 역할이 미약하였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며 잘하는 공동체만 계속 지원함에 따라 장기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체는 의욕을 상실하여 관심부족 및 지원기회가 희박하여 참여열기가 저하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 관련단체의 역할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IV. 개선 방향

1. 개설

수산자원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자원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인 정책의 집행과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개별법 및 규칙 등에 산재해 있는 많은 자원관리규정들이 남아 있는 형편이며 지속적이고도 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의 체계 및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성격에 관한 이해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수산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들 자원이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16조에서는 어업권을 물권으로 취급하여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재산권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어업권은 공유수면 자체에 대한 권리와 관계없이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이용권에 가까우나 많은 어업인들의 법의식은 어업권을 마치 사적소유권의 대상으로 여긴다¹²⁾. 실정법 규정과 달리 움직이는 이러한 실체관계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저해한다. 앞으로는 어업권이 재산권이 아닌 이용권 성격의 권리를 가지도록 입법과 해석에 있어 규범과 사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2) 수산자원관리법제연구, P.9

3. 포획,채취금지, 시기.지역등에 관한 탄력적 운용

과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포획금지 대상이었던 북쪽말뚝성게의 경우 개체수가 많은 데다 군집의 형태로 이동을 하며 해조류가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섭취, 갯녹음 현상을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로 알려져 있었다. 인위적으로 바닷속 생태계 회복을 위해 조성한 바다숲에 사는 미역·다시마 등 각종 해조류를 성게류가 먹어치워 이에 대한 포획·채취금지의 한시적 해제가 요청되기도 하였다.¹³⁾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보듯 개체수의 조절 등을 위한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이 다른 수산자원관리제도와의 상충관계 발생 등이 발생하기 쉬운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후변화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해양생태계에 큰 변동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해 및 연안의 어장환경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해류시스템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조류의 북방으로의 이동 및 초식어류의 이동등 해양생태계의 변동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등에 의한 연구 및 조사가 해양생태계 변동에 대응 가능한 즉각적이고도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모색

자연적,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수산자원에 대하여 일부 어업인에게 면허 및 허가의 형식으로 권리를 제공하여 수산자원

13) 강원해양수산포럼, 김영대, 2007.10

의 공급 독점을 가지는 결과를 얻게 된 지금 수산자원관리법상 많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자각과 자율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바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수산자원이 가진 제 특성 등으로 인하여 예전부터 많은 공적규제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규정과 다양한 정책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등 수산자원관리 규정을 하나로 묶어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하여 각 개별법 상의 자원관리정책의 근거를 하나로 모은 가운데 앞으로도 각 개별법속의 자원관리 정책과의 통합과 유기적인 해석 및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상위 입법이 이루어져서 법적안정성 및 정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후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근해 및 연안의 어장환경역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바 이에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대응 역량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으로 회복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은 수산자원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의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자원관리정책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한 일률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자각과 자율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바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 국립수산과학원, (2008)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 보고서, 자원회복사업단
국립수산과학원, 2009년 경상남도 인공어초어장관리 조사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사업보고서(환경분야),2007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자원조성 연구, 자원회복사업단.
김대영 외, 수산사업조성사업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2010
오조환, 합리적인 수산자원의 개발 방향, 어항, 1993
최용철,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해설, 어선, 1984
최종화·심호진, 수산자원관리제도론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전재경,2002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 규제개혁 사례연구, 류정곤 외
황갑수, 수산업법해설, 수협중앙회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자원,어장
김대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방향,수산동향, 2010.07